
「코로나19(COVID-19)」 관련

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(11편)

2023. 2. 10.



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
산재예방지원과

‘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[11판]’ 개정 내용

□ (마스크 착용) ‘23. 1. 30. 『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』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내 전체에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* 개정

* <마스크 착용> 교육기관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

※ (중앙방역대책본부)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」 내용에 따름

□ (시행시기) ‘23. 2. 10.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

1

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

□ 직무교육

- (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) '20.2.4. 이후 유예(과태료 면제)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'22. 6. 30.자로 종료
 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*이 '22. 6. 30.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
 - * 안전·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(위촉 포함)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(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)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
↳ 예시) '22. 6. 1.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'22. 9. 1.
 -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'22. 6. 30.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 일자가 '22. 7. 1.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

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

- (근로자)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·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
- (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) '20. 9. 8.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'22. 6. 30.자로 종료

□ 기타 사항

- (실시간 화상교육*) 사업주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,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
 - '22. 6. 30.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 해제시까지 연장

※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

* '실시간 화상교육'이란 PC,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·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서, 강사·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

- (모바일교육*) 사업주가 근로자·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 「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29호)」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, ②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**를 하는 경우, '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(모바일교육)' 가능
- '22. 6. 30.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모바일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 해제시까지 연장
- ※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,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
- * '모바일교육'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,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
- **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
 - ① 모바일교육 수강 시 '작업 중 수강금지', '운전 중 수강금지' 내용 공지할 것
 - ②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
 - ③ 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,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
 - ④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
- (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) 고용노동(지)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'22. 6. 30.까지 유예
- (교육일정 조정)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,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
- (평가시 불이익 금지)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

[참고] 교육대상별·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시간

구분		신규교육	정기교육 / 보수교육	작업내용 변경 시 (1회)	특별교육 (1회)
근로자	일반	▶ 8시간	▶ (일반) 분기별 6시간 ▶ (사무직) 분기별 3시간	▶ 2시간	▶ (일반)16시간 ▶ (단기간·간헐적 작업) 2시간
	일용	▶ (일반) 1시간 ▶ (건설업) 4시간	-	▶ 1시간	▶ (일반) 2시간 ▶ (타워크레인 신호 업무) 8시간
	관리감독자	-	▶ 연 16시간	-	-
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	안전보건관리 책임자	▶ 6시간 이상	▶ 6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	안전관리자/ 보건관리자	▶ 34시간 이상	▶ 24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	안전보건 관리담당자	-	▶ 8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	일반	▶ 2시간	-	-	▶ 16시간
	단기·간헐	▶ 1시간	-	-	▶ 2시간

□ 공통사항

○ 인원 기준

-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('22.4.18.)로 행사·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

* 단, "시설 내 밀집도 완화" 원칙 하에, ①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②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③칸막이 설치 또는 ④시설 특성에 맞게 교육생 간 충분한 간격 유지 환경 조성 등을 사업장(교육기관 포함) 특성에 맞게 적용

○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

- 교육장, 공용물품,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(일 1회 이상) 및 환기(일 3회 이상)

-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(손 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예절 등)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

* <마스크 착용> 교육기관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(마스크 착용 방역지침, '23.1.30.)

○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(붙임1)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

-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(오전·오후 등)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

-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(붙임4)에 따라 신속히 조치

○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, 상시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, 환기 설비를 가동

- 창문 환기 시 창문을 동시(외기, 복도)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

○ 냉·난방기(공기청정기 포함) 사용 시, 수시로 환기 실시

*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을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

□ 안전보건교육기관

- (사전안내)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
- (유증상자) 교육 중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교육생(유증상자)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(만 60세 이상)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
- (확진자) 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사업장을 소독하고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교육생들에게 공지 및 사업장 내 확진자·접촉자 조사·관리 기준(붙임4)에 준하여 관리
 - *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동거인, 확진자가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를 의미하며, 이외 시설·개인의 접촉자는 보건소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기관 자체 매뉴얼에 따르거나 자율 관리
- (교육생 출결 관리) 교육기관은 교육생인 **확진환자**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**격리기간** 등에 대해서는 **출석(교육 수강)으로 인정**
 -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한 교육생으로서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(미복귀 시 출석으로 미인정)

3

감독·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

- (원칙)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
- (심층 인터뷰 등)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(안전·보건조치 등)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(대피요령 등)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*
 - *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
 - 심층 인터뷰*는 무작위로 선정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,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** → 과태료 부과
 - *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,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
 - **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,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

4

시행시기

- (시행시기) '23. 2. 10.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

마스크 착용

< 개인방역 보조수칙 : 마스크 착용 >

①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

- 마스크 착용, 손 씻기,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.
-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-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'의약외품'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.
- '의약외품 마스크'가 없을 경우 면(천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

-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.
-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(nose wire)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.
-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,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.
-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. 만졌다면,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.
-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,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·밀집·밀접(3밀)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.
-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, 어지러움,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.
-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.

③ 마스크 착용 의무·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

<마스크 착용 의무·권고 상황>

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.
-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.

<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

-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-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밀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-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또는 감염 위험시설(3밀)·취약시설(요양병원 등)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.

<상황별 권고 마스크>

상황		보건용 마스크		수술용 마스크	비밀차단용 마스크
		KF 94	KF 80		
의료 관련 상황	·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	필수	-	-	-
	·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때 ·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	(우선) 권장		사용 가능	
생활 방역 상황	·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· 환기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환경인 경우	(우선) 권장		사용 가능	
	· 다수가 밀집해 비밀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	권장			

④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

- 집·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,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
※ 발열·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가정에서 고위험군(60세 이상, 기저질환자, 임신부 등)과 함께 생활하거나,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
- 음식 섭취, 수영·목욕, 세수·양치,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

⑤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(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)

- ① 24개월 미만의 영유아, ②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, 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※ 단,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,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·보호자의 세심한 관찰·감독이 필요

※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예외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” 참조

<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>

○ 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

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경계·심각”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- (과태료 부과) 계도기간 1개월('20.10.13.~'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
 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5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이상 200만원)

○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대상

- (착용 의무)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*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**의 실내
 *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: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
 ** 대중교통수단: 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택시, 항공기 등
 - (관리 의무)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게시 및 안내 의무
- ★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

<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

-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 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 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-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○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

- 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밀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, 그 외 천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 가능
 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 ※ 망사형 또는 벨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- (착용법)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
 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○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<p>예외 대상자</p>	<p>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</p> <p>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되지 않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4개월 미만인 영유아 •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<p>예외 상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염취약시설의 침실·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*과 있을 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다인 침실·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·입소자, 상주간병인, 상주보호자 •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•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•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•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 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수어통역을 할 때 • 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) 할 때 •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 •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 •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 	

□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

- 확진자 본인이 사업장 방역관리자에 즉시 신고
- 확진자 발생 확인 즉시, 방역관리자는 확진자의 복무관리자에 통보 조치, 사업장 내 공지 및 접촉자 조사 실시
- 확진자 업무복귀 기준 안내
 - 7일 격리 후 3일간은 주의기간으로, 수칙을 지키며 출근 가능
 - * 주의기간 수칙 :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 모임은 자제

<접촉자 대상자별 관리방안>

■ 사업장 내 접촉자 조사·관리 우선순위

우선순위	접촉자 조사 대상
1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확진자와 동일 공간(기숙사 또는 숙소)에서 생활하는 구성원
2순위	(확진자의 증상 발생일(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)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
3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동일 공간(부서)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* 방역수칙 준수 하 회의 참석자는 3순위에서 제외

※ 상기 사항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

1순위 : 확진자와 동일 공간(기숙사 또는 숙소)에서 생활하는 구성원

- ① **확진자는 별도 격리공간으로 즉시 분리**
 - 확진자가 다수일 경우, 확진자끼리 동일공간 격리는 가능
- ② **확진자가 '기숙사 동일 호실 생활자'를 동거인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보건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**
 - 기숙사의 동일 호실 생활자는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보건소의 '조사대상 접촉자'임
- ③ **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**
 - 수동감시 : 관할 보건소에서 수동감시 대상자에게 수칙을 안내하고 준수를 권고하고, 수동감시 대상자는 수칙을 자율 준수하는 관리 방식

2순위 :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, 15분 이상 대화 등

-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⇒ 유증상 시 동네 병·의원 검사·치료
- ②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, 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의 총 2회 실시
- ③ 인지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

3순위 : 동일 공간(부서)에서 근무하는 구성원

-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⇒ 유증상 시 동네 병·의원 검사·치료
- ②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실시
- ③ 증상 관찰하면서 출근 가능

□ 접촉자 대상자별 검사방안

○ 만 60세 이상 또는 검사대상 지정 문자 받은 자*

*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, 해당 확진자로부터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은 자도 해당

- PCR 검사 우선순위로,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

○ 만 60세 미만

- 증상이 있는 경우, 동네 병·의원에서 의사 진료 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PCR 검사 실시

* 의료기관 자체 PCR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, PCR 검사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발급받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

- 증상이 없는 경우,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실시

-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, 지체없이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확인 전까지 자택 대기

【주의사항】

-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착용,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
-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,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

-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, 필요 시 주기적으로 반복 검사

※ 특히, 만 60세 이상 고령자, 고위험 기저질환자, 면역저하자의 경우 조기 진단·치료가 중요하므로, 진단검사 적극 실시 독려

□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포스터 [23.1.31.]

2023.1.31.

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?

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
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

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

- ▶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(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) 의료기관, 약국, 대중교통수단(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택시, 항공기 등)

OX로 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

지하철역,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	지하철, 기차, 버스 안	전세버스, 통근버스, 학교나 유치원, 통학버스	쇼핑몰	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	직장	카페, 식당
×	○	○	×	○	×	×

※ 직장과 카페, 식당의 경우,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

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

- ▶ **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**
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▶ **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**
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▶ **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**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▶ **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**
- ▶ **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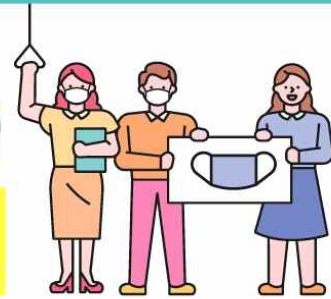
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,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□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별 정리 포스터 [23.2.6.]

2023. 2. 6.



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별 총 정리!



대중교통	의무	대중교통수단의 실내 (지하철, 기차, 버스, 택시, 항공기, 도선, 여객선, 전세버스, 통근버스 등)
	권고	대중교통시설 내·외부 (승하차장, 지하철역, 기차역, 공항 등)
교육시설	의무	통학차량 안 (유치원, 학교, 학원 등)
	권고	유치원, 학교, 학원 등의 실내
의료기관	의무	보건의료 서비스(진료, 검사, 치료, 수납 등) 제공 장소, 다인 병실
	권고	연구동, 사무동, 기숙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(진료, 검사, 치료, 수납 등)와 무관한 건물 또는 층, 1인 병실
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/비입소형 시설	의무	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(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)
	권고	감염취약시설 중 비입소형 시설 (지역사회 재활센터 등)
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내	의무	복도, 휴게실 등 공용 공간
	권고	다인 침실, 병실 등 사적인 공간
마트, 쇼핑몰	의무	마트, 쇼핑몰에 있는 약국
	권고	마트, 쇼핑몰 내 이동통로 등 약국 외 공간

*과태료 부과 예외, 원칙적으로는 착용 권고

□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(식약처)



KF94 마스크 ·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

KF80이상 마스크

- 기침,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- 건강취약계층^①과 기저질환자^②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
비말차단용·수술용 마스크

-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·더운 여름철·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

① 건강취약계층 노인, 어린이, 임산부, 만성질환자 등

②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, 당뇨, 만성 신질환, 만성 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암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

미세입자 차단

호흡 용이성

KF94

> KF80

비말 차단용

수술용

KF94

< KF80

비말 차단용

수술용



마스크 착용 전
깨끗이 손 씻기



입과 코를 가리고,
틈이 없도록 착용



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
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



입만 가리는 착용 턱에 걸치는 착용 걸을 만지는 행위 코만 가리는 착용

-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·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
-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



마스크 선택법

식약처가 허가한 **의약품**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

마스크 폐기법



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

※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

□ **슬기로운 환기수칙 포스터 ['23.2.3.]**



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방법

- 

하루 최소 3회, 매회 10분 이상
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
- 

냉난방기가동 중에도
자연환기는 필요
- 

선풍기, 환풍기를
동시 활용하면 환기 효과 증가

환기장치 등 기계환기 방법

- 

환기장치는 외부 공기가
유입될 수 있게 최대한 하고,
내부 순환모드는 자제
- 

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
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
- 

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면
오염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효과

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

- ✔️ 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의 환기는 필요
- ✔️ 제품에 표시된 적용 면적을 확인하여 대상 공간에 맞는 용량의 공기청정기 사용
*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준용량 대비 1.5배 이상의 용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
- ✔️ 공기청정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
일반적으로 집진필터(헤파필터)는 6개월~1년 사이에 교체, 제조사의 교체 주기 및 필터 오염상태에 따라 변경



실내 환기 생활화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해요!